



범유럽 개인연금상품(PEPP) 도입 논의와 이슈

김유미 연구원

유럽연합은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완하면서 회원국 간 보장수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범유럽 개인연금상품(Pan-European Personal Pension: PEPP)을 제안함. PEPP는 가입자의 운용 편의성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미리 설정된 다섯 가지 투자옵션 중에 선택, 5년마다 공급자와 투자옵션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. 회원국들은 대체적으로 PEPP 도입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나 세제, 자산운용, 상품구조 등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고 일부 국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실제로 출시되기까지는 회원국 간 의견 절충과 타협이 필요해 보임

■ 유럽연합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완하면서 각 회원국간 보장수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

-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고 있음¹⁾
- 각 국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인연금 가입이 요구됨
 - 현재 유럽인 25~59세 개인연금 가입률은 27%에 불과하며, 이마저도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²⁾
- 한편 회원국 간 연금제도 및 적립금 수준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각국 간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요구가 제기됨

■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(EC)는 유럽 전역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범유럽 개인연금상품

1) OECD(2017), *Pension at a glance*

2) EC(2017), "Commission launches a new pan-European personal pensions label to help consumers save for retirement"

PEPP(Pan-European Personal Pension)를 제안함³⁾

- PEPP는 유럽 전역에서 판매되는 개인연금상품으로 각국의 연금제도, 세제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은행, 증권, 투자회사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함⁴⁾
- PEPP 공급자는 유럽전역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, 투자 자산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
- 유럽연합 내 모든 국가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진 동일한 개인연금상품이 판매됨으로써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원국에서 높은 수요를 기대할 수 있으며, 이는 회원국 간 노후소득보장 수준 차이 해소에 효과적일 수 있음

■ PEPP는 가입자의 운용 편의성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미리 설정된 투자옵션 중에 선택하도록 하며, 5년마다 공급자와 투자옵션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

- 가입자는 디폴트 옵션을 포함한 다섯가지의 투자옵션을 설정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제한은 가입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연금자산의 운용을 모색하기 위함임
- 가입자는 5년마다 국가 간 이동제한 없이 공급자와 투자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데, 이는 판매경쟁으로 이어져 보다 경쟁력 있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임
 - 공급자는 5년마다 계약을 재설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가입자의 대규모 인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

■ PEPP는 범유럽 개인연금제도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회원국 간 이질성이 높은 만큼 세제, 자산운용, 상품구조 등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음⁵⁾

- PEPP가 유럽 전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변경이 가능하려면 국가 간 세제혜택과 공급자 간, 혹은 기존 상품 간 세제혜택 차이로 인해 부당한 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
 - FECIF⁶⁾는 유럽 회원국 간 기존의 개인연금 세제혜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⁷⁾ 통합된 과세체제

3) EC(2017. 6. 29), "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pan-European Personal Pension Product(PEPP)"

4) FECIF 규정 초안 제 5조에서는 6가지 유형의 PEPP 공급자를 규정하고 있으며, 공급자는 Solvency II, IORP, MIFID 등의 다른 EU의 규제도 함께 받게 됨

5) FECIF(2017. 9), "FECIF position on Pan-European Personal Pension"

6) FECIF: European Federation of Financial Advisers and Financial Intermediaries

7) E&Y에 따르면, 유럽 회원국 간 개인연금 세제혜택의 이질성이 높은 편이나 대체적으로 EET(Exempt-Exempt-Tax system)나 ETT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(E&Y(2017), "Study on the feasibility of a European Personal Pension Framework")

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국가의 방식을 벤치마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간 이동성과 판매경쟁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- 투자옵션의 제한은 저위험-저수익의 투자전략으로 이어져 노후소득을 제공하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자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투자전략을 설정하도록 장려되어야 함
 - 퇴직 전에는 다소 공격적인 투자전략을 세우되, 퇴직 직전에는 보수적인 투자전략으로 전환하여 은퇴자산의 안전성과 충분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함
- 공급자와 투자옵션을 변경하는 주기가 5년으로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공급자가 가입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적립금이 이탈할 우려가 있음

■ 회원국들은 대체적으로 PEPP 도입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나 일부 국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실제로 출시되기까지는 회원국 간 의견 절충과 타협이 필요해 보임⁸⁾

-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PEPP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, 상품 설계, 세금처리, 자산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함
- 상대적으로 연금제도가 잘 구축된 국가들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었으며, 특히 독일의 경우 국가적으로 개인연금시장보다 퇴직연금시장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비판적인 입장임
- 한편 퇴직연금의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IORP⁹⁾도 PEPP 공급자에 포함되었는데 다른 공급자들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[kiri](#)

8) EP(2018. 1. 8), *Working document*(COM 2017/0343), (C 2017/4393)

9) Institutions for occupational retirement provision